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팀장 손용석(6571) / 팀원 이연주(6548)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0204호

시행일자 2019. 11. 28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

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-841호 (2019.11.12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9531호 (2019.11.13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58호(2019.11.28.)

3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51호, 2019.11.26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가. 주요내용 : 체강 내 천자 및 배액용 등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(5항목) 등

나. 시행일 : 2019년 12월 1일부터

다. 문의처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(☎044-202-2740)

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.”

